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3조).

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보호관

을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보호관이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시정,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습선택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보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반하는 학교장, 학급담임, 특정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로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0교시"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학습활동으로 자율학습,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5.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6.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 출결, 성적, 생활지도, 진학 등에 있어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조(학습선택권 보호관 설치) ①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인천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두며, 각각 3인으로 구성한다. 보호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학생인권관련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인천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인 2명을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보호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보호관은 소속 직원 중에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관의 기능) ①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습선택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4.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 그 밖에 보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은 학습선택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보호관에게 그에 대한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청구자는 학습선택권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보호관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천시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평가 지표에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항목을 신설한다.

2. 인천시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의 판단을 위해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온라인 조사'를 연 1회 실시해야한다.

3. '전수 온라인 조사'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4. '전수 온라인 조사'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학급담임에 대해서는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에서 총점의 1/10에 해당하는 감점을 조사 횟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부여한다.

5. 보호관의 조사나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은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3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